

---

산재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발표 토론회

# 산업재해는 가족에게도 사회적재난이다

---

일시 : 2021년 11월 11일 14시~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공동주최 : 사단법인희망씨,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국회의원실, 정의당 강은미국회의원실
- 공동주관 : 사단법인희망씨,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산재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토론회

# 산업재해는 가족에게도 사회적 재난이다

2021. 11. 1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YouTube 강은미TV / 노동이수진TV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최** 사단법인 희망씨, (재)공공상생연대기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 국회의원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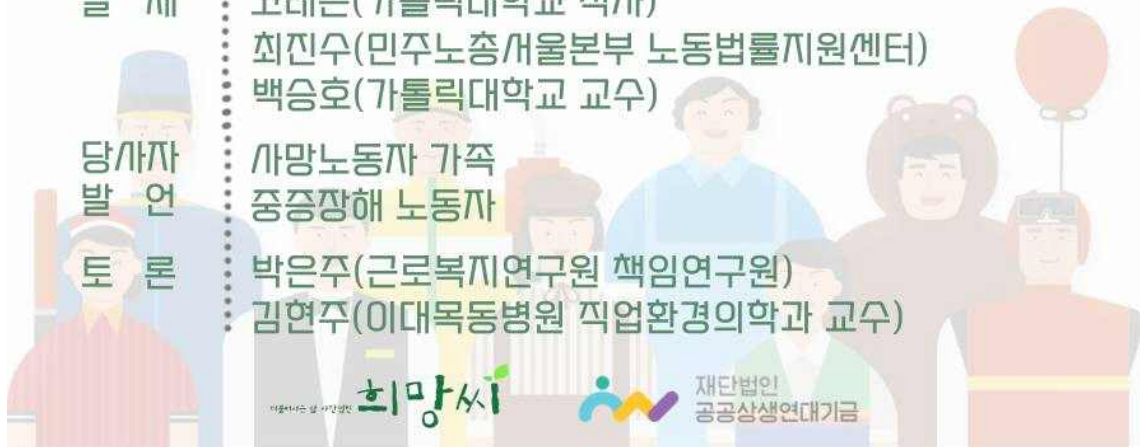
**공동주관** 사단법인 희망씨,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 네트워크

**좌 장** : 이남신(사단법인 희망씨 이사,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발 제** : 고태은(가톨릭대학교 석사)  
최진수(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백승호(가톨릭대학교 교수)

**당사자  
발 언** : 사망노동자 가족  
중증장애 노동자

**토 론** : 박은주(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다

희망씨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

산재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발표 토론회

# 산업재해는 가족에게도 사회적재난이다

---

## □ 자료 순서

### 1. 인사말

- 사단법인 희망씨 김진규이사장 ..... 6
-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병훈 이사장 ..... 7

### 2. 축사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 국회의원 ..... 8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10

### 3. 발제문

- 산재가족경험연구 고태은 ..... 12
- 산재 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검토 최진수 ..... 19
- 산재(사망) 노동자가족지원정책제안 백승호 ..... 33

4. 사례 토론문	
- 최동범 .....	40
- 하필원 영상토론 .....	42
- 정선영 .....	43
5. 토론문	
- 박은주 .....	47
- 김현주 .....	53
6. 산재(사망)노동자가족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캠페인 사업단 소개 .....	57
- 사단법인희망씨	
-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 노동건강연대	
-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비정규직지원단체네트워크	
- 사업단 소개	

## 산재가족경험 연구결과 토론회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규(사단법인 희망씨 이사장)

산재가족경험 연구결과 토론회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년동안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느라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족들의 말씀 하나하나 담으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까? 어떻게 가족들을 만날까? 가족들과 무엇을 나눌까?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방안이 필요할까?’ 각각의 과정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실행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일년에 2천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합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만난 가족은 전체 가족 중 극히 일부입니다. 더 많은 가족들, 특히 산재 승인조차 되지 못한 가족들이 어떤 삶과 어떤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과물이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니고, 오늘이 자리가 ‘토론회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을 안전한 일터 만들기와 함께, 갑작스럽게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부상을 맞닥드린 가족들의 황망함을 보듬고 일상을 회복해 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이수진 의원실과 강은미 의원실, 그리고 무엇보다 일 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사업단 구성원 모든 분들께 온 맘을 다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 우리사회에 산재노동자 가족과 함께하는 상생·연대의 희망씨가 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병훈(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이병훈입니다.

우리 재단은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대표하는 양대노총 공대위가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재단은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사단법인 희망씨와 함께 산재노동자 가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재노동자 가족에게 작게나마 돕기 위해 긴급지원을 실시했고,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정책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연구 및 동행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산재노동자 가족들은 산업재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산재보험 승인을 받기 위해 대응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을 꾸려가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 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산재노동자 가족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기존 복지제도는 이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재노동자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 산재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 선대위 노동희망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늘, “산재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토론회-산업재해는 가족에게도 사회적 재난이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같은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님, 사단법인 희망씨,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동주관을 맡아주신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 네트워크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가톨릭대학교 고태은 석사님,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님, 가톨릭대학교 백승호 교수님과 당사자 발언을 맡아주신 사망노동자 유가족, 중증장해 노동자 분, 토론을 맡아주신 근로복지연구원 박은주 책임연구원,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주 교수님 등 모든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산재 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 경영책임자, 법인, 정부 책임자 처벌 없이는,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 들어서 생명 존중, 안전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죽고, 그 가족들이 끊임 없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에서 출범하게 된 것이 산재예방TF입니다.

산재는 산재 당사자가 가족의 주된 소득원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심리·정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가족은 산재 당사자에 대한 돌봄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지원 체계는 산재 당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재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산재 가족에 관한 연구조차도 거의 없는 것은 우리가 그간 ‘산재 가족’의 어려움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정책적인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산재 당사자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재해 지원 체계를 넘어서, ‘가족부양’ 담론이 강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까지 그 바운더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판단을 위해, 산재 유족뿐만 아니라 산재 당사자 생존의 경우에도 그 가족의 삶에 대한 경험을 듣고 이를 정책 도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산재 가족이 산재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현장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든 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하다 집에 무사히 돌아오는 세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재해는 가족에게도 사회적 재난이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국회의원(비례) 이수진

## 「산업재해는 가족에게도 사회적 재난이다」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재해는 가족에게도 사회적 재난이다」

- (산재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 -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작년 한해 산업재해자 수는 108,379명 이었습니다. 산재 사망자도 매년 2,000여명에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재해는 재해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동반하며 이를 극복하기까지 수 많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첫 관문이 산재 신청과정입니다. 사고나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다니면서 관련 서류를 떼는 등 산재승인에 따른 입증책임도 저야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이 너무나 큰 실정입니다. 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산재로 평생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는 장애등급 1~3급 가족들은 당장 경제력 상실에 따른 생계곤란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산재노동자 가족 지원체계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등 부처별로 마련되어 있지만, 어떤 서비스를 어떤 조건의 산재노동자 가족이 신청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다보니, 정보접근능력에 따라 지원받는 현황은 천차만별입니다.

분명한 것은 산업재해를 반드시 줄여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재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사회가 산업재해에 따른 가족의 고통에 이해를 높여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에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사단법인 희망씨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수진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님 감사합니다. 발제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 고태은님, 최진수 노무사님, 백승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토론자로 나와주신 박은주 책임연구원과 김현주 교수님,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주신 토론주제 당사자이신 재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가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과 함께 산재사고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산재 승인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 산재 가족들의 심리지원 등 산재가족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국회의원 강은미

# 산재가족 경험연구

고태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질적 인터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조사는 가족 구성원이 산업재해로 중증 장애를 입은 가족이나, 사망한 유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3장은 산재로 인한 중증 장애 및 사망을 경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가족들의 경험과 욕구를 조사하였음.

### 연구 자료

주 분석 자료 \_ 산재 가족 연구 인터뷰 (8)

분석의 참고 \_ 전문가 인터뷰(3), 동행지원 인터뷰(2)

### 자료분석방법

일반적 질적연구의 분석방법을 따름

가족들의 욕구를 범주 별로 구분하고, 부분의 경험의 구체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함

사고사 유가족, 과로사 유가족, 장애 가족 총 세 가지 사례로 유형화 하여 유형별 사례 내 분석을 진행함

# 산재 사망(장해)가족

## 연구참여자 정보

	산재유형	산재발생시점	산재승인시점	산재승인&법률 분쟁	연구참여자 (산재노동자와의 관계)
A	중증장해	2014	2016	승인 손해배상 승소	배우자(아내)
B	과로사	2016	2019	승인	처제
C	중증장해	2016	2016	승인 사고가해자와 합의	배우자(아내)
D	과로사	2019	2021	승인. 연금액 책정 중	배우자(아내)
E	사고사	2018	2018 (불복심 2021)	불승인	배우자(아내)
F	과로사	2020. 10	2021	승인(일시급) 합의 진행 중	부모(어머니)
G	사고사	2021. 5	-	합의 우선 진행 심사 중	배우자(아내)
H	사고사	2020. 11	2021	합의 우선 진행 승인	자녀(아들)

# 사례 별 분석(주요 이슈 중심)

사고사 유가족	과로사 유가족	중증 장해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 승인 과정의 어려움</li> <li>• 애도할 새 없는 가족들</li> <li>• 사후 신변정리의 막막함</li> <li>• 사회적 고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산재 승인 과정</li> <li>• 유가족의 사회적 고립</li> <li>• 심리적 고통의 만성화</li> <li>• 산재보험으로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들</li> <li>• 비성인 가족의 발달지연 및 심리적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 사고가 가져오는 가족 변화</li> <li>• 산재신청 과정이 주는 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li> <li>• 가족 역할의 과중</li> <li>• 장애 가족으로서의 사회적 변화</li> <li>• 변화된 경제적 욕구</li> </ul>

## 산재가족의 욕구

### 제도적 소외: 산재보험 승인 절차에서의 가족 소외

정보 접근의 어려움\_노동자 가족에게 '산업재해'의 개념은 낯설고, 과로사(과로자살), 질병사 등은 사고와 달리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산재 신청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권익 침해를 경험하기도 함.

전문가 중심의 절차\_산재 신청 시노무사(법률전문가) 선임이 필수적인 법적 과정이 이어지고, 심사 또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됨. 가족들은 수동적 위치(답변하거나 증거를 제출함)에 제한됨.

산재 승인 과정의 주는 공공에 대한 불신\_법제도의 무능함, 관료화된 공무원의 태도나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공공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됨.

산재가족의 일-권한의 불균형\_산재 책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의 역할이 가족에게 주어짐. 그러나 일터에 대한 접근성, 회사에 대한 강제력 등이 부족하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개인과 회사와의 불균형적 다름\_기업이라는 법인과 가족 개인의 법적인 다름은 가족들에게 무력감을 줌. 회사의 적극적 방해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경험됨.

과로사 유가족: 가족에게서 시작되는 책임 입증\_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가족력에 대한 증명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족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함. 산재 승인을 통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나, 과정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음.

장해가족: 산재 신청 과정에서의 권익 보호의 어려움\_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오가는 급성 치료기에 산재 신청이 진행되면서 가족들이 이러한 절차와 보상에 대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재가족의 욕구

### 제도에서의 배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재난 가족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복지제도\_갑작스러운 가족 위기를 마주한 이들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부재. 가족들의 심리적 상황이나 물리적 조건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렵게 함. 정보접근성의 한계, 일회성 연계,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등은 서비스 신청이나 수혜 유지에 어려움을 주고, 근로복지공단 제도들은 가족들의 욕구를 포괄하기에 적은 수준이라고 느낌.

사각지대에 떨어진 재난가족\_산재는 가족들을 재난 상황에 빠뜨림. 그러나 기존의 복지 기준(자산조사, 취업여부 등)은 가족들의 복지 서비스 수혜를 어렵게 함.

산재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비스\_일상생활 보조(가사서비스/단기 간병서비스), 권익옹호형 원스톱 서비스, 산재 가족에 대한 이해 있는 전문가의 심리 서비스, 가족력 증명에서 자유로운 건강검진 등.

장해가족: 근로복지공단 소속 재활병원의 보호망\_가족의 전업적 간병 부담을 덜어줌. 가족 프로그램의 제공 및 전문가의 조력. 지속적 가족들에 대한 관리

산재가족: 다차원적 권익옹호 활동\_산재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출판, 자발적 산재가족 네트워크와 조력 형성, 노동안전 차원에서의 합의나 법제정 운동을 주도함.



## 산재가족의 욕구

### 가족 역할의 과중: 일과 부담의 과중

**가족의 역할: 선택과 결정의 부담** 자체로도 힘든 재난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책임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부담감이 큼. 갑작스러운 선택이니 만큼 충분한 고려와 판단을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을 경험하게 됨.

**일의 중첩과 공백** 산재 직후 간병, 생계, 돌봄, 산재 신청 등의 일을 경험함. 산재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도 가족의 몫이 됨. 책임이 일부 가족에게 몰리면서, 소진과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어려움.

**노조와 자조모임: 권익옹호와 가족 결정권의 보장** 노조 및 시민대책위는 가족들에게 선택과 결정의 부담을 줄여 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산재 이후 발생하는 전반적 상황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가족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함. 자조모임 또한 서로에게 노하우를 전하며 권익옹호자로서 역할하거나, 든든한 지지체계로서 가족들의 소외를 막음.

## 산재가족의 욕구

### 사회적 관계의 변화: 단절과 고립

**기존 관계와의 단절** 산재 이후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여 기존 관계가 불편해짐.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 동료나 회사와의 갈등이나 외면을 경험한 경우, 관계적 상실감이나 무력감이 더욱 크게 경험됨. 산재 가족의 경험은 '같은 산재 가족'이 아니고서야 이해받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됨.

**회사와의 다툼으로 인한 사회 인식의 변화** 산재 소송은 가족들에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적대적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기존에 가진 사회와 사람에 대한 기대(신뢰)를 무너뜨림. 산재 승인 이후에도 이러한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내상을 입기도 함.

**고립되는 가족들: 낙인과 비난** 보상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노동자, 노조 같은 단어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가족들이 비난에 노출됨. 한부모가족, 자살, 자녀 잃은 부모, 장애처럼 사회적으로 '불쌍한 존재'로 여겨지는 단어들 또한 가족들에게 무겁게 다가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노출된 여론이나 보육/교육기관에서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자녀(동생)이 이에 직접 노출되기도 함.

**가족들의 새로운 사회** 사회 안에서 경험하는 이질감이 자조모임 안에서 해소 됨. 산재보상 합의 과정에서 노조, 시민대책위에서 활동했던 연대자들과의 지속적 관계도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기도 함. 가족들의 사회적 역할을 다짐하게 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침.

**장애가족: 장애 가족으로서의 사회적 변화** 장애가 가족의 사회적 관계나 활동의 제약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지위의 변동을 크게 체감함. 장애접근성으로 인한 삶의 제한이나 변화가 크게 다가옴.

## 산재가족의 욕구

### 사회적 문제의 개인화

#### 산재가족의 사회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문제의 개인화:** 정신적 심리적 통증으로의 전이\_갑작스러운 산재 상황과 트라우마가 가족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옴. 이 시기 적절한 지원과 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이 해소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 시기 단절과 고립 속에 이를 개인화 하게 되고, 정신적, 심리적 통증으로 남게 됨.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유가족의 사회적 활동 또한 심리적 고통을 수반한 과정임.

**가족 관계의 갈등과 단절**\_가족들이 서로를 돌 볼 수 있는 여건이나 여유가 없어 관계적인 개입이 어렵고, 서로의 상황에 대한 개입이 어려워짐. 가족들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가족 해체로 이어지기도 함.

**비성인 가족의 발달심리적 문제**\_아동의 사회적 경험, 발달단계, 다른 자극 등이 합쳐져 긴 시간에 걸쳐 관찰됨. 자녀들은 이로 인한 신체적 고통의 호소, 공황, 자해, 분리불안, 언어발달의 지연 등을 경험했음. 비성인 자녀를 홀로 돌보아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게 됨. 부모의 정신적 건강의 문제가 자녀의 발달심리적 문제에 다시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

## 산재가족의 욕구

### 사회적 문제의 개인화

#### 겹겹이 쌓이는 심리적 문제

**부정적 심리적 압박의 지속**\_가족의 사고나 사망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를 일으키지만, 이후 산재승인 과정에서 죽음이나 사고에 대해 곱씹는 과정이 가족들에게 지속적 고통을 줌. 회사와의 갈등이나 분노, 산재 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인 것은 가족들을 점차 위축되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대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함.

**돌볼 틈 없는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_스스로에 대한 돌봄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을 생각 할 여유를 가지기 어려움. 산재 이후 가족들은 생애 전반에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극단적 감정들을 경험하지만 이에 대한 아픔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음.

**만성화:** 정신적, 신체적 훼손\_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유되기 보다 만성화 되기 쉽고, 만성화가 신체적 증상으로 전이되기도 함. 산재 승인 이후에도 생계의 일을 할 수 없고, 타인을 돌볼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기도 함.



## 산재가족의 욕구

### 사회적 문제의 개인화

#### 산재 가족의 사회적 울타리

**단절과 고립의 보호막:** 산재가족모임 당사자 모임은 가족들에게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유일한 사회적 공간으로서 중요한 지지체계가 됨. 원가족보다도 더욱 가족같이 느껴진다고 표현함. 가족들은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보다 가족모임 안에서의 공감 안에서 안전감을 느끼고 회복되기도 함. 코로나로 인한 만남이 제한되어 고립감이 커졌으며, 모임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느낌.

**당사자 역할:** 인정과 지지, 사회 구조의 개선자. 모임 구성원 간의 심리적 지원과 지원 서비스를 넘어 법제정 등을 통한 사회 개선 활동에 뛰어들거나 필요를 체감하는 서비스 구축에 함께 하기도 함.

든든한 동료지원. 산재는 개인의 아픔을 넘어 사회적 문제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권익옹호, 동료지원 활동을 참여하기도 함.

## 산재가족의 욕구

### 경제적 어려움: 가려진 경제적 욕구

**산재 이후 변화된 경제적 욕구.** 산재보험이나 회사로부터 받는 경제적 보상은 경제적인 도움을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드러내지 않게 함. 사회문화적으로 경제적 보상에 대한 터부도 이에 작동함. 산재 이후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는 것 또한 가족의 경제적 욕구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함.

**가족의 경제력 상실.** 사망 이전 노동자의 임금소득액과 연관 깊은 산재/국민연금액은 산재 이전에 불안정한 노동을 하던 노동자 가족에게는 더 적은 소득을 보장하게 함. 산재 이후 갑작스러운 가족구성원의 취업 또한 가족 경제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큼. 또한 산재사고가 가족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함.

**산재보험의 불충분성.** 산재 승인 이전의 기간이 대체적으로 긴 과로사 가족의 그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큼. 또한 산재 이후 '이사'나 '리모델링' 등 주거와 관련한 욕구가 있는 가족들이 많았지만 해소 방법이 없음. 장애가족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들이 연금액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됨.

**산재의 필연적 가족 부담.** 사회적으로 부족한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결국 그 몫을 가족의 것으로 돌리고, 가족들은 이로 인한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림.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하는 것보다 다른 가족의 책임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은 소득을 버는 삶에 강제되는 것.

# 산재가족의 욕구 종합 욕구표

범주		하위범주
제도적 소외: 산재보험 승인 절차와 노동자 가족		정보접근의 어려움 전문가 중심의 절차 산재 승인 과정이 주는 불공평에 대한 불신 산재가족의 일과 권리의 불균형 개인과 회사의 불균형적 대응
제도에서의 배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재난가족		접근성 떨어지는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떨어진 재난가족 산재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비스
가족 역할의 과중		가족의 역할: 선택과 결정의 부담 일의 중첩과 공백 노조와 자조모임: 권익옹호와 가족결정권의 보장
사회적 관계의 변화: 단절과 고립		기존 관계와의 단절 회사와의 단절로 인한 사회인식의 변화 고립되는 가족들: 낙인과 비난 가족들의 새로운 사회
사회적 문제의 개인화	산재가족의 사회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문제의 개인화: 정신적, 심리적 불응으로의 전이 가족관계의 갈등과 단절 비정인 가족의 발달심리적 문제
	겹겹이 쌓이는 심리적 문제	부정적 심리적 압박의 지속 끝을 볼 없는 가족의 심리적 문제들 만성화: 정신적, 신체적 훼손
	산재가족의 사회적 울타리	단절로가 고립의 보호막: 산재가족모임 당사자 역할: 인정과 지지, 사회구조의 개선자 분명한 동료지원
가려진 경제적 욕구		산재 이후 변화된 경제적 욕구 가족의 경제적 상실 산재보험의 불충분성 산재의 필연적 가족부담

## Q&A

고맙습니다

<산재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

## 산재 가족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 검토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 / 공인노무사 최진수

## 산재 가구 생활 상태 분석 (2017 요양종결자)

<경제활동 유형>

장해등급 (6범주)	경제활동유형(6범주)					
	원직장복 귀자	재취업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 동인구
1~3급	0.00	4.85	0.00	0.00	1.24	93.91
4~7급	20.54	19.24	1.67	0.78	4.27	53.50
8~9급	24.39	33.67	5.78	0.79	6.23	29.13
10~12급	26.59	38.28	5.28	0.26	5.03	24.56
13~14급	26.66	43.48	6.15	0.49	7.14	16.09
무장해	33.95	38.25	5.38	0.17	5.87	16.37

## 산재 가구 생활 상태 분석(2017 요양종결자)

###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

장해등급(6범주)	직업재활서비스 미이용(%)	사회재활서비스 미이용(%)
1~3급	93.76	62.98
4~7급	76.76	67.03
8~9급	81.03	78.22
10~12급	78.61	79.08
13~14급	87.75	87.29
무장해	96.34	96.60

## 산재 가구 생활 상태 분석(2017 요양종결자)

### <희망하는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장해등급 (6범주)	심리관련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	취업관련 프로그램 (취업준비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금연, 건강검진 등)	취미관련 프로그램 (음악, 미술 등)	기타
1~3급	12.90	7.37	66.18	11.22	2.33
4~7급	8.12	28.38	53.91	6.12	3.46
8~9급	3.81	36.66	43.70	8.93	6.90
10~12급	3.37	33.48	55.22	4.68	3.24
13~14급	4.77	38.64	46.81	6.64	3.14
무장해	4.74	35.87	44.78	9.20	5.41



## 산재 가구 생활 상태 분석(2017 요양종결자)

<심리 및 가족상담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

장해등급 (6범주)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1~3급	24.18	27.69	21.61	26.52
4~7급	7.55	26.58	35.98	29.89
8~9급	4.32	19.75	38.17	37.76
10~12급	3.42	16.50	39.16	40.92
13~14급	3.70	14.53	41.66	40.12
무장해	3.79	14.75	40.60	40.85

## 산재 가구 생활 상태 분석(2017 요양종결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등 지원 필요성>

장해등급 (6범주)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1~3급	41.04	31.53	8.41	19.02
4~7급	29.15	37.07	17.90	15.88
8~9급	23.97	33.14	21.27	21.62
10~12급	22.01	33.57	20.78	23.64
13~14급	19.94	28.32	29.52	22.23
무장해	19.06	27.56	26.73	26.65

## 산재 가구 생활 상태 분석 (2017 요양종결자)

### <경제적 문제 해결 수단>

장해등급 (6범주)	부모 또는 형제, (손)자녀의 도움	다른 친척의 도움	저축금	장해연금 등 사회보험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배우자의 수입	기타
1~3급	20.73	1.30	5.55	59.96	6.24	6.21	0.00
4~7급	21.76	1.17	12.14	43.58	5.63	14.88	0.84
8~9급	29.53	2.12	20.49	9.81	18.05	18.16	1.86
10~12급	26.43	1.45	25.79	7.46	13.97	23.95	0.94
13~14급	26.90	2.05	32.94	4.50	14.26	16.98	2.37
무장해	35.87	1.04	28.71	6.83	9.75	15.74	2.06

## 산재 가구 생활 상태 분석 (2017 요양종결자)

###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지>

장해등급 (6범주)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3급	21.54	29.95	33.54	14.97
4~7급	34.56	36.40	22.07	6.96
8~9급	39.21	36.78	19.85	4.17
10~12급	46.59	35.99	15.18	2.24
13~14급	48.56	33.11	16.02	2.31
무장해	50.73	34.75	12.13	2.39

## 산재가족 지원 관련 법 체계

### 산재법 제92조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략)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근로복지공단 내규 -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상 장학사업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가족에 대한 간접 지원>

구분	요양 단계	회복 단계	직업복귀 단계
내용	심리상담(재해자/가족) 희망찾기프로그램(재해자) 멘토링프로그램(재해자) 취미활동반 지원(재해자) 가족화합지원 (재해자/가족)	직장복귀지원(재해자) 재활서비스지원(재해자) 사회적응프로그램(재해자) 재활보조기구지급(재해자)	원직장 복귀지원(재해자/사업장) 재취업지원(재해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프로그램(재해자) 산재장애인 국가장애인 등록 지원(재해자)

중증 재해 노동자 전문간병 서비스 : 장해 1~3급, 고령 중증 진폐장애인 대상 부설 케어센터에서 주거 및 생활 공간 등 제공(경기요양병원, 태백병원)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

구분	대상	종류	내용
생활 안정 자금 용자	(월평균 소득 : 중위소득 이하)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 1~9급 5년 이상 장기요양 CS2 질병 3개월 이상 요양, 평균임금 ≤ 최저임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 금, 취업안정자금	한도액 범위 내 연리 1.25% 저리 용자
장학 사업	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배 우자, 자녀 장해 1~7급, 배우자,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 CS2 질병, 배우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재학중 고등학생 입학금, 수 업료, 학교운영비 지원

간병급여: 가족 간병인에게 간병급여 지급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 근로복지공단 지원체계의 한계

#### <산재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 다양한 재활 서비스의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많음.
- '현장 요양서비스'를 통해 공단 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고는 있으나,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기능보다는 과잉 서비스 제공을 감시하는 기능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중증장애인 전문 간병서비스는 간병기관을 확대하고, 대상자 또한 확대할 필요.

#### <산재 가족에 대한 서비스>

- 생활안정자금 용자의 경우 주소득자의 경제생활 단절 또는 중단이라는 상황 고려시 그 범위가 협소
- 장학사업의 경우 대학학자금은 제외되어 있음.
- 간병급여는 전문간병인에 비해 간병료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실제 산재가족이 호소하는 지원은 아이돌봄, 가사돌봄,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자조모임 지원, 법률구조, 가족부양 지원 등 다양한데 지원 내용이 한정적임.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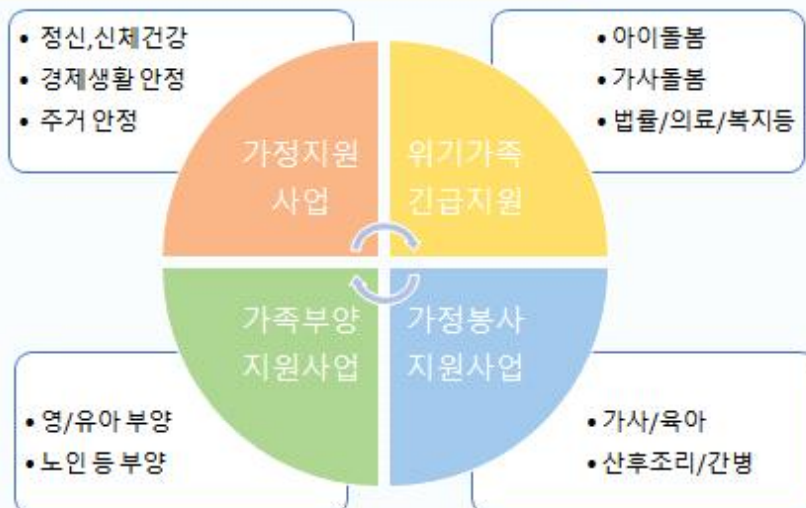
구분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지원 내용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재신청 관련 법률서비스 연계 가족상담	<중대산업사고 등 대상>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 <한계>

-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는 산재신청 관련 법률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기도 하나,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정식화 되어있지 않음.
-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산재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심리상담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국에 13개소만 운영 중에 있음.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은 법률상 직접 근거 없이 <재정지원사업>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어 계속 운영 보장이 어렵고, 지원 범위 역시 제한적.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 지원사업>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구분>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취약 위기 가족	사례관리	심리/경제적 자립 등 위한 사례관리 실시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및 모임 등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자립서비스 연계>	- 직업훈련/창업컨설팅/돌봄서비스 등 연계
		<기관 연계>	- 고용지원센터/법률상담소/신용회복기관/학교 등
		<물적자원 연계>	- 생계비/창업자금/장학금/의료비 등 자원 연계
		<인적자원 연계>	- 후원자/자원봉사자/법률전문가/학습교사 연계
		<정보제공>	- 건강/법률/직업교육/보육서비스/아이돌봄 등 정보제공
자녀학습 정서지원	<배움지도사 파견>	- 초/중등 자녀 학습지도 및 정서지지	
생활도움 지원	<키움보듬이 파견>	- 만18세 미만 일시돌봄/활동지원/정서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긴급위기 가족	긴급심리 정서지원	<지지리더 파견> - 지지리더/전문상담사 파견 심리상담
	긴급가족 돌봄지원	<키움보듬이 파견> - 양육돌봄/노인돌봄/가사돌봄/동행/병원돌봄
	가족역량 증진지원	<가족역량 증진지원> - 교육/집단프로그램, 가족치유프로그램, 자조모임 - 법률/의료/복지서비스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연계 지원

<긴급위기가족 지원사업>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구분	구분	전체가정수	종결가정수	향상 가정수	향상률(%)
2019년	자기효능감	3,157	1,228	1,138	92.7
	가족기능			1,070	87.1
2020년	자기효능감	3,496	1,293	1,087	84.1
	가족기능			1,130	87.1

<위기가족 지원사업 효능감 및 가족기능 향상률>

한 계

취약위기

- 허들의 존재(중위소득72%/한부모/다문화)

긴급위기

- 긴급위기 개념의 협소 - 산재는 제외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센터

영역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기획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 조정
중증정신 질환관리	편견 해소 사업 24시간 위기관리 지원 초발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 탈원화 전달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노숙정신질환 관리	신규 발견체계 구축 사례관리서비스 위기관리서비스 주간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식개선사업 24시간 상담 및 지원 자살위기개입 체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고위험군 조기검진 지원	홍보 및 교육사업 1577-0199 상담전화 고위험군 조기발견 / 치료연계 어린이/청소년/성인 우울증, 스트레스 노인 우울증/치매
정신보건 환경조성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언론 네트워크 구축 지원	자원봉사운영체계 구축 경찰 및 구조구급 네트워크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 서비스> : 주로 심리적 어려움에 집중 / 정보접근 능력에 따라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 보건복지부 -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구분	심리 정서 지원	환경/경제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내용	애도 상담(생활,가족,정신건강) 자조모임 지원 체육/문화활동 프로그램 심리부검 면담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일시 주거비용 지원 법률/행정처리(사망신고, 상속, 금융 등 관련) 비용지원 학자금 지원(고교/대학교) 사회 참여 및 동료 지원	그 외 복지 수요는 지자체 복지부서로 연계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 정보접근능력과 무관 / 법령상 근거 모호&사업의 안정적 확대 불투명 / 자살 가족에 국한 / 산재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는 제외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 보건복지부/지자체 - 긴급복지 서비스

구분	긴급지원 내용
금전 또는 현물 직접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현금/현물 지원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입소 / 이용서비스 제공 / 비용 지원
	<교육 지원> - 초중고생 수업료/입학금/학교운용비/학용품비 지원
	<그 밖의 지원> - 연료비/위기상황 극복 필요 비용 / 현물 지원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기관 등 연계>
	<상담/정보제공/그 밖의 지원>

<긴급복지서비스> : 위기상황 그 자체를 요건 / 신속하지만 일시적 지원 원칙 / 중복지원 배제 / 돌봄, 집단 상담, 산재관련 법률서비스 제외/ 지자체별 서비스 등 불균일 / 정보접근 어려움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 행정안전부 -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지원 대상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가족, 상해 피해자, 재산상 큰 손실, 직업전환 필요자, 심리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내용 (대한적십자사)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연계 서비스>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문치료병원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 산재도 사회적 재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명확하지 않음 / 심리상담 또는 치료서비스에 국한 / 정보



# 공공기관별 산재 가족 관련 공적지원 체계

## 정부부처-유관기관별 지원체계 요약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b>주요 기관</b>	<b>주요 기관</b>	<b>주요 기관</b>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 (긴급복지서비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b>주요 내용</b>	<b>주요 내용</b>	<b>주요 내용</b>
정신/신체적 건강지원 소득 보장 주거안정 지원 가족돌봄/가사돌봄 집단프로그램 법률구조/의료지원/복지연계 학자금 지원 사례관리 재활/교육훈련 등	재해자 재활서비스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학사업 간병서비스/급여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	생계비/주거비/의료비지원 교육비/연료비/장제비지원 전기요금 등 지원 전화상담 심리상담/치료기관 연계

# 산재 가족 민간 지원 체계

## 노동조합 및 시민대책위

노동조합/시민대책위		
산재대응 관련 정 보제공/자료 조사	사업장 측과 면담 지원	산재신청 관련 전 문가 연계

### <산재 가족 우선/특별채용>

- 단체협약 통해 산재 가족의 우선/특별 채용 규정
- 100명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의 약 18%에서 규정
- 대법원의 유효하다는 판단(대법 2016다248998 판결)

## 산재 가족 민간 지원 체계

### 김용균재단

- 사고 발생한 2018.12. 이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중대재해처벌법 제,개정 활동 등 산재 관련 다양한 활동
- 산재 가족에게 노동조합 등의 지원과 연대를 위한 가교 역할 / '산재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발간

### 과로자과로자살유가족모임

- 과로자살 유가족들의 자조 모임
- 과로자살 산재승인/과로사 관련 사회적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 유가족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심리상담에 관한 정보 공유
-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
- 유사한 자조모임으로 '다시는',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모임', '반올림' 등

## 산재 가족 민간 지원 체계

### 근로복지공단 재활병원 산재장해가족 자조모임

- 산재 장해 가족들이 재활 돌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한 자조모임
- 산재 관련 정보 공유 / 심리적 어려움 공감 / 상호 부조

###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 발생시 언어/정보습득/공간적 차이/경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
- 주로 종교단체들이 지원 활동
- 산재발생 후 거소 알선/산재신청 과정 언어 통역 지원/ 산재 경험이 있는 노동자 매칭하여 정보 교류 촉진

## 산재 가족 민간 지원 체계

### 민간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 산재 가족과 지원서비스간 심리적 거리 단축에 탁월
- 단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에 대한 수용도도 공적지원체계에 비해 높은 편
- 공적 지원체계에 비해 정서적 지지 또는 연대에 훨씬 능숙함.
- <한계>: 근본적으로 공적 지원체계에 비하여 재정적/인적 한계로 인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가 한정적

끝.



# 산재(사망) 노동자가족지원정책제안

백승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1. 산재 및 산재가족 지원을 위한 법체계 개선

### 1) 산재가족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한 법 개선: 재난가족지원법 제정

- 현재 산재와 관련된 법은 주로 산재 사망의 경우 유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질병이나 장애 산재의 경우 의료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산재가족을 보호하는 법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산재는 당사자 가족에게는 갑작스런 재난 상황이다. 사망 유가족에게는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충격이, 중증 장애 산재 가족에게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장애 상태가 가족의 경제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산재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또한 산재로 인한 사망과 장애는 일반적인 사망사고나, 장애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물론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은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생애주기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욕구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따라서 산재 가족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사회서비스 욕구는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에서 산재 가족의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산재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단순한 돌봄 욕구, 의료서비스 욕구, 심리서비스 욕구와 다른 재난과 같은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또한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산재 뿐 아니라, 자살,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의 재난 상황에 직면한 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없다. 건강가족지원, 긴급지원 등 파편화된 가족지원 서비스가 존재할 뿐이다.
  
- 산재가족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한 접근은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산재 가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위기 가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 현행 가족 지원제도는 대표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상의 위기가족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긴급복지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법의 주된 목적이 가정이 사회

통합을 위한 기능을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있으며, 재난에 직면한 위기가족 긴급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개념이<sup>1)</sup> 자연재난이나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어 산재가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산재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

-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산재가족의 의료, 소득보장 욕구를 충분히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
- 따라서 현행의 위기가족 긴급지원에서 재난의 범위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에 추가하여 산재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재난가족지원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가족재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재난 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앞서 제안한 건강가정기본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 기존의 위기 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산재가족을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은 새로운 법적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실행이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지원체계는 여러 부처별로 나누어져 산재해 있어 재난상황에 직면한 가족들이 경험하는 다층적 욕구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재난 뿐 아니라, 산재, 자살 등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재난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재난가족지원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재난가족지원법 중심으로 통합하여 포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재난가족 지원법은 재난의 정의와 지원 대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천재지변 같은 자연적 재난,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산재와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난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대상자의 범위를 재난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및 유가족과 친구 그리고 재난 구조 및 서비스 제공 종사자 등을 포괄하도록 규정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가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건강가정지원법 제21조의2는 재난에 직면한 위기가족의 긴급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재난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2) 산재가족 권익 옹호를 위한 법 개선

- 앞 절에서는 산재가족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산재가족의 권익 옹호를 위한 법 개선 내용을 살펴본다.
  
- 먼저 산재 승인 절차와 관련된 지원 체계 개선 방안으로 산재 사업장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
  -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질문하거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129조 제2항 제4호) 규정되어있다.
  -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 조항일 뿐이고, 현장 조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구조상 촘촘한 조사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산재승인 신청인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산재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회사에 대하여 질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제재하는 강제 규정은 없다.
  - 따라서 산재 신청 과정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근로복지공단보다 훨씬 적극적인 산재 승인 신청인에게도 질문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응 시에는 신청인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명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덜어 준 사례가 존재한다(대법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
  
- 둘째, 산재 가족 권익 옹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 산재 가족에게는 산재 승인 관련 법적 절차, 산재 불승인 시 불복 절차나 산재 이후 회사와의 합의나 손해배상 등의 과정에서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 현재 증명 책임이 개인(노동자, 유가족)에게 있는 구조는 개인이 거대 법인인 회사와 싸우도록 하는 구조를 양산해 가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 산재 가족들의 경우 산재 이후 가족이 법적 조사를 받거나 서류에 사인을 하는 등 차후 가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 권리나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권리와 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
  - 그리고 산재 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절차가 한 차례 더 이어지면서 이중의 조

사과정을 거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단)의 중재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 3) 산재법상 복지 증진 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의 확대

- 산재 가족에 대한 법적지원체계의 개선과 권익옹호를 위한 법개선 뿐 아니라 산재 가족에 대한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산재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학사업 등 복지증진 사업의 대상을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에서는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유족뿐만 아니라 중증 요양상태 또는 장애 1~7급 등의 가족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 그러나 지원이 필요한 가족의 범위는 더 넓을 수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산재 가족 지원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산재법 제92조 제1항 제2호의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산재 가족에 대한 지원이 생활안정자금 용자와 장학사업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산재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다양한 형태(현금, 현물, 보건·복지 서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법 개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2. 산재가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와 서비스 욕구

### 1) 산재가족 지원 통합 시스템의 구축

- 산재가족 통합지원 시스템의 목적은 산재 승인부터 이후 생활상의 물질적 심리적 어려움 등 전 과정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산재 발생시 산재 승인 및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 현재 산재 가족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며, 산재가족들은 자발적인 가족 모임이나 민간단체의 지원 시스템에 의존하여 산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 산재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산재가족에 대한 특화된 지원방식 보다 공공 소득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에서 산재가족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위기에 직면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돌봄, 취업, 의료, 심리상담 등 다양한 욕구

를 가진 산재가족이 이용하기에는 분절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산재가족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소득 기준 등 자격조건의 제약으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도 제한적이다.

○ 따라서 산재가족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산재발생 시점에서의 권익옹호 및 긴급가족지원, 일상 회복 과정에서의 돌봄 등 가족지원, 장기적으로는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및 자조모임 지원 등 산재가족에게 필요한 단계별 지원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산재는 가족이 예상치 못하게 경험하는 위기 상황이다. 따라서 산재초기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경향이 있기때문에, 가족들에게 서비스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행정적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 2) 산재 가족의 주요 서비스 욕구

### (1) 산재 심리 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동료지원 상담가의 역할

○ 산재 유가족들은 산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심리상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 특히 일반적인 심리상담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적인 트라우마 상담과 달리 산재와 산재가 가족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동료지원상담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전문적 트라우마 상담과 산재를 이해하는 동료지원상담가의 역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산재가족 지원 서비스에는 필수적이다.

### (2) 돌봄지원

○ 자녀돌봄, 가사 및 간병과 관련된 서비스는 산재 사고 직후 필요한 서비스로 자주 언급되었다.

- 자녀돌봄 서비스, 가사 및 단시간 간병 서비스는 산재로 인해 돌봄 책임과 간병을 전담하게 되는 경우, 소진을 막고, 산재 관련하여 필요한 다양한 사후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소득 기준 등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산재 가족에 대한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조건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 (3) 심리지원

- 산재승인여부를 떠나 작업장에서의 재해나 사망사고는 산재가족들에게 매우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 특히 산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유가족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산재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은 산재가 가족의 책임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망사건 산재 승인 여부 통보시(특히 불승인 통보시) “유가족의 탓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다.
- 산재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단발적 서비스 연계를 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개입이 필요하다.
  - 비성인 가족(자녀, 동생 등)이 경험한 가족의 장해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은 뒤늦게 발현되어 가족들에게 잠재적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뿐 아니라 가족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높다.

#### (4) 경제적 지원

- 산재 이후 가족의 경제적 욕구는 개인의 저축, 다른 가족들의 원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에서의 보험급여가 존재하지만, 주 생계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 큰 도움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족들은 개인의 저축이나 다른 가족의 원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 특히 중증 장애 산재의 경우 의료비 지출과 보장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로 인해 일반적인 가구와 달리 소비지출 수준이 높았다.
  - 따라서 산재보험 급여의 적절성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 (5) 동료지원가 양성 및 제도 운영

- 산재라는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 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동료지원가는 산재 가족의 심리·사회적 욕구 해소와 산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산재가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때문에 산재 가족에 대한 수용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동료지원가는 산재가족에게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사례관리, 당사자간 지지와 위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동료지원가는 산재가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나오며

-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는 산재 승인 관련 자료조사와 확보에 있어서 노동자 가족의 개별적 대응보다 효과적이고, 가족의 어려움도 덜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노조나 시민대책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족의 경우 산재 승인 및 위기극복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특히 자살 산재유가족들은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산재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심지어 산재 승인 신청 자체를 꺼려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산재승인도 어려워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있었다. 산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사회적 타살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낙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념은 산재유가족에게 사회적 시선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부여하고 있었다.
- 그리고 산재가족들에게 죽음이나 장애는 산재보상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한 경제적 보상을 바라보는 통상적인 불편한 시선들은 산재가족들에게 이중의 상처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산재는 사회적 타살이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 위협이다. 따라서 산재가족에 대한 지원은 동정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인정과 사회적 연대의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재가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산재의 특수성만을 고려한 협소한 접근보다는 보편적 재난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재에 특화된 정책보다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시스템의 틀에서 산재 관련 정책들이 통합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 물론 산재가족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작업장에서 산재가 사라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다.

## 정말 막막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최동범

안녕하세요 전 2020년 6월 1일 천안 목천 쿠광 물류센터에서 조리원으로 근무 중 사망한 박현경의 남편 최동범입니다. 전 지난 10월 말 1년 4개월 만에 산재 인정을 받았 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만나 기까지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디에다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 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사망 이후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은 아이들과 남은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경제 적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보고 연 락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인소 득부터 따져가면서 지원여부를 따지는 것이 처음부터 닥치는 위기였습니다. 한 가족에 게 위기가 닥쳐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정책에는 산재 가족의 상황이 부합이 되질 못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없다”가 돌아오는 답변이었습니다.

### 정말 막막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을 충분하고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채, 저 같은 유가족이 마주한 현실은 또 다른 고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노무사를 선임하였고 산업재해 신청에 관한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 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연 잘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경제적 곤란이 심각해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산재를 신청하는 등의 행동조차 기약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압박 때문에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갖지 못하고 아픔을 묻은채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현실이 저 자신에게는 너무 혹독했고, 유가 족에게 해당하는 지원이 이렇게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이 너무 괴롭고 “죽음” 이라 는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렵게 주변의 시민사회 단체의 도움으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하게 되 었습니다. 셋이나 되는 아이들과 저희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극도의 슬픔/분노



/불안/우울 등의 감정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이런 지원을 왜 국가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유가족들은 어떻게 알 수는 있을까?’

**너무나 높은 벽 뒤에 숨겨진 보물찾기 같았습니다. 왜 체계적인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 건지...**

유가족이 모든 것을 찾아다니며 지원책을 알아보고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모든 입증과 책임이 전가 되어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그나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조사와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산재 가족 누군가는 또 다른 절망을 이겨내며 자료를 모으고 죽음의 원인을 재구성해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순탄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1년 동안 회사 앞에서 투쟁했는데,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니다. 유가족의 마음과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측의 태도에 상처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갖 형태의 방해와 경찰의 방해 또한 우리나라의 공권력에 다시 한번 실망과 허탈함을 금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금만, 단 1%라도 고인과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해서 무조건적인 원리 원칙보다는 우리에게 신뢰가 무너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사회와 제도에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유가족은 어디에 비통함을 호소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 기관의 적절한 대처는 유가족의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무조건적인 수사 종결을 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분쟁에 눈치 싸움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유가족의 바램은 정당한 수사와 직업적인 원인뿐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생기지 않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족은 1년이 넘도록 상담을 하였고 여러번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또한 상처로 남아 아이들과 남은 가족에게는 기약 없는 고통으로 평생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아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19라는 재난으로 온 나라가 힘겨운때에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은 얼마나 심각한지 유가족들이 피맺힌 목소리를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신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례토론 - 영상토론

## 산재노동자 가족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시 개선방안

정선영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산재사고로 무릎 위 두 다리를 절단한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남편이기에 사고 당시 믿기지가 않았고 연락받고 응급실로 달려갔었다는데 저 자신도 충격이 너무 커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고 1차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부터 기억이 난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청소도중 기계오작동으로 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정지가 왔고, 30분 동안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남편의 몸에는 맥주 500cc 1컵 반 정도의 피박에 없어 급하게 수혈을 받고 투석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오염이 심한 두 다리를 절단한 것보다 먼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치료의 우선이었습니다. 항시 여러과의 교수님들의 협진이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했고 사고 당일 급기야 의사로부터 오늘을 넘길 수 없으니(단정지으심) 가족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고 학교에서 연락받고 왔던 딸아이를 집에 돌려보냈다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아빠를 보기 위해 다시 불러와야 했습니다. 다행히 절단부위가 지혈이 잘 되어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중환자실에서 한 달 반까지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2주쯤 지나 다리 소독하러 수술실에 갔다 올라왔는데 지혈이 되지 않아 또다시 순식간에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또 한참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카운트 세기를 여러번 하며 수혈과 투석을 번갈아가며 해왔고 두번의 심폐소생술로 인해 신장이 망가져 소변이 한방울도 나오질 않았고 서너분의 신장내과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조금 나아진다해도 일주일에 서너번은 평생 혈액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다리를 절단한 것보다 평생을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에 또 주저앉았습니다. 투석할때 겨우 눈만 뜨고 있던 남편의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걸 알기에 더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소 술담배를 안했던 남편이기에 기적적으로 조금씩 소변이 나왔고 어느 순간 투석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차 수술엔 무릎 밑을 절단했었는데 감염이 심해져 2차 3차 수술땀 결국 두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신장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마무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면회오던 날 피범벅이 된 병실과 숨을 헐떡이며 멎어가는 아빠의 모

습을 보고 당시 13살 중1이던 딸아이에겐 충격이 컸을 텐데 여느 사춘기 아이들처럼 투정한번 부모에게 맘껏 부리지 못하고 일찍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전 딸아이를 친척집이나 지인집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딸아이가 극구 혼자 있겠다고 해서 걱정은 되지만, 오늘내일하고 있는 남편때문에 신경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으며 키우던 강아지를 의지하며 혼자 학교를 다녔고 이모나 교회지인분이 가끔 와서 돌아봐 주는게 전부였을 때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최대 5개월을 투석까지 해가며 위험한 고비를 마치고 더 이상 대학병원에 있을 수 없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산재병원이 있다는 걸 알고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회복지쪽에 관심이 있던터라 산재병원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산재 환자 가족들이 산재병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외부병원을 떠돌아다니다 재활 시기를 놓친 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인천산재병원에 와서 그때부터 힘든 재활치료를 견뎌야 했습니다. 휠체어에 혼자 탈 수도 없었고 화장실도 혼자서는 갈 수 없었던 남편이 정말 하루에 한가지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와 치료사 선생님도 매일매일이 감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사고 당사자인 남편이 다리를 절단한 순간부터 자신이 당한 사고와 현재 상태를 바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사고 후 간병인 없이 홀로 간병했던 저에게 고마워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던 남편에게는 희망과 감사뿐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간병이었지만 저 또한 자신의 상황을 빨리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남편덕에 3년 가까이 의자와 보호자침대에서 자더라도 힘든 줄 몰랐답니다.

인천산재병원에서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가족화합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막 재활을 시작한 환자와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위로해 주고 서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산재 환자와 가족들한테 그 어떤 재활치료보다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마칠 즈음에는 리마인드웨딩 촬영을 웨딩업체 후원으로 해 주셨는데 당시 의족도 맞추지 않았던 남편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의 기수들이 8주간의 모임을 끝나고도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을 치유할 공간도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산재수가만 높이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재환자와 그 가족들에겐 마음이 먼저 치유되면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재활치료는 저절로 되며 효과도 배가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산재환자의 마음이 편해지면 간병하는 보호자들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 보호자들의 마음이 치유되면 환자에게 더 케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호자들도 대부분 환자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하기에 꼭 함께

덜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활과정에서 병원내에 있는 특수재활팀에서 하는 목공예 수업이 있는데 사고 전부터 관심이 있던터라 남편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그 시간만큼은 통증도 잊고 잡념도 없어져 산재환자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단, 재미로만이 아닌 실력을 쌓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1등을 하며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내일 모레면 국제대회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재환자들에게 유용한 특수재활프로그램마저 몇 개가 없어졌고 목공예 프로그램만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없어지려고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의족을 신고도 목발 두개로 걸을 거라던 수술하신 교수님 말씀에 열심히 재활한 덕에 지팡이 두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운전도 하며 이제는 배드민턴 직장부 운동선수로 출근도 합니다. 산재노동자라고 해서 집에만 있지 않고 동창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지인분이 하시는 주말농장에 가서 일반인 분들과도 똑같이 어울리니까 지인 분들도 남편이 장애인이란 생각이 잘 안든다고 하십니다. 산재환자들에게 환자들끼리만 만나기보다 일반인들과도 어울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산재환자 가족으로서 개선할 점과 부탁드립니다 싶은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산재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기기의 수가가 너무 적습니다. 10년 넘게 바뀌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고가의 보조기기를 써야하는 환자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큼니다. 남편의 예를 들자면, 의족이 양쪽임에도 산재에서 지원해 주는 의족수가는 얼마 되지않으며, 한 쪽 의족이신 분들보다도 더 낮게 책정돼 고가인 의족을 구입하기엔 본인부담이 너무 큼니다.

두번째로는,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너무 길어 착용하다 보면 쉽게 떨어져 실제 환자들이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특성에 맞게 내구연한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간병이 아니라 회사와의 소송이었습니다. 환자 당사자들은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해 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기에 소송은 오롯이 보호자의 몫입니다.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산재신청서 작성하는 것 부터 간병하기에 버거운 보호자들에게는 산너머 산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 유리한 쪽으로 작성한 후 사인만 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녹취와 증인 세우는 일 등등 소송 자체만으로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뿐만 아니라 산재환자들이 챙겨야 할 여러가지 혜택이나 제도들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알아가야 하는 실정이고 그 때마다 값비싼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산재전문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독려해 주고 정보도 함께 알아봐 주면서 문서나 양식으로만이 아닌 제도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산재환자 분들의 재활치료 목적은 모든 치료과정을 마치고 퇴원 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정상인처럼의 생활은 불가능 할지라도 최대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다고 생각합니다. 걸 실천하기 위해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짬을 내 당시 빌라 3층이라 엘리베이터가 없던 집을 팔고 퇴원 후 남편이 자유롭게 다닐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와야 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보호자라서 가족이라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산재노동자 가족들이 헤쳐 나가기엔 너무 힘이 듭니다.

##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생활 실태 및 경험에 관한 연구」 토론문

박은주 (근로복지연구원)

- 산업재해는 재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거의 없음. 가족이 연구주체에 포함된 경우라도 주로 재해자와 가족과의 관계, 가족이 재해자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가족구성원의 재해자에 대한 간병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즉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재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전에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집단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주로 현금보상에만 집중하였음. 그러나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화되는 가운데, 2005년 찾아가는 서비스, 2008년 재활서비스의 보험급여화 이후, 현금보상 이외에도 재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서비스들이 도입되면서 현금보상 위주의 보험행정에 서비스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유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금보상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의 지원서비스는 거의 없음. 이는 산재보험이 ‘재해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임
- 그러나 산재로 인하여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하여 관련된 연구들이 축적이 필요한데, 이 연구는 산재의 영향을 받은 가족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됨
-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구대상인 가족을 유가족과 중증장애가족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두가지 유형은 경험의 종류가 다르고 지원방안도 다르게 고려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번에 분석하고 있어 가족의 경험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음. 유가족에 대한 연구와 중증장애가족에 대한 연구는 구분해서 진행하면 그 실태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음
- 이 연구가 유가족 및 중증장애 가족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만큼, 본 토론에서는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함

## 산재가족 지원시스템 체계화 및 산재가족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유가족의 경험을 고려할 때 통합적인 가족지원시스템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가족구성원의 사망 이후 유가족은 산재신청과 사후 신변정리 등 다양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정보를 모르거나 많지 않아 적잖이 힘들. 유가족에게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갑작스런 가족구성원의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유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통합적인 가족지원시스템은 접근방식을 크게 두가지 즉, 산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에 의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산재 유가족에 대해서만 고려할 수도 있음
- 우선 전자의 접근을 보면, 가족구성원의 사망 이후 경험은 산재신청, 교통사고처리 등 일부분만 제외하면 그것이 산재가 원인이든 아니든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과 그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족구성원의 경험과 욕구가 다르지는 않을 것이므로 유가족 지원체계는 모든 유가족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됨. 다시 말해 유가족별로 특수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보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나, 어차피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원.연계를 중심으로 설계할 것이므로 누군가 중심적인 기능만 한다면 특수한 욕구의 경우 다른 기관으로 연계를 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산재유가족의 경우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공단 등 다른 전문기관에 연계하면 됨. 이러한 보편적인 접근은 원인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으므로 접근성이 높고, 산재유가족의 경우 산재승인 전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빠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있음
- 연구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확장과 재난가족지원법의 제정, 두가지를 제안하고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확장이 재난가족지원법의 제정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재난가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조항을 만드는 것임. 유가족들이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는 다차원적이라 어차피 여러 부처별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중요한 것은 누가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한지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만약 별도의 법률을 만든다면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음. 이를 담당하게 될 기관이 유사업무인 취약위기가족지원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적절하므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확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음. 서비스의 내용은 자살유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고려하여 산재나 교통사고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사망 등 좀더 보편적인 형태로의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후자의 접근을 보면, 산재 유가족에 대해서만 고려한다면 공단이 그 업무를 할 수 있음. 공단이 한다면 산재의 특수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은 아니니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문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족의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코디네이터 또는 상담사를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족급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경우 신청전에 그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코디네이터 내지는 상담사가 있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음. 이들은 산재신청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이슈를 유가족에게 전달하여 신청절차를 도울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산재가족지원통합시스템의 목적을 산재승인부터 이후 생활상 물질적 심리적 어려움 등 전 과정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산재승인과 다른 서비스를 동시에 관리하기에 적합한 기관이 없을 것 같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재난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을 한시적(예를 들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으로 제공하고 산재신청은 공단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정도의 기능이 더 낮지 않을까 생각됨

### 산재신청과 관련된 어려움

- 일반적으로 유가족 및 중증장애 가족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크게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가능하고, 산재라는 특수성에 의해 산재신청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추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대부분의 재해자는 산재보험을 수급하는 경험을 한번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는 상당수 사람들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신청절차도 제도내용도 잘 모른다는 것을 의미함.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내용들이 많고 급여의 종류가 많아 내용을 들어도 어려움. 그나마 최근에는 언론기사에 산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아져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산재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 산재신청은 가족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첫 관문임. 우리나라는 재해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재해자가 신청하지만, 상당수는 재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연구에서 언급한대로 나중에 손해배상소송과 연결이 될 수도 있어 회사가 신청을 해준다고 해도 함께 검토할 필요는 있음
- 일반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으니까 산재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대처가 가능하지만, 특히 사망의 경우 생전에 고인이 어떻게, 얼마나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치게, 혹은 아프게 되었는지 가족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대응이 쉽지 않음.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고사를 제외하고 유족들은 신청과 관련하여 막막할 수밖에 없음. 때문에 일반적인 재해의 경우 대부분 산재신청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지만, 유가족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음

- 이 연구에서는 산재신청과 관련된 대안으로 사업장의 자료 제출과 관련한 법 개정, 법률적 지원 등을 언급하였음. 연구에서 제안한 것, 위의 산재신청 상담사 이외에도 덧붙여서 의료기관의 조력, 사업장의 자료제출의무, 그리고 국선노무사 제도 등을 언급하고자 함
- 우선 산재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하게 되므로 산재 가능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물론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도 산재와의 관련성을 처음에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산재신청에 대하여 안내하고 공단으로 연결하여 신청방법 등에 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일반 재해의 경우에는 요양신청도 의료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 사업장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업무환경, 업무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회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의 재해조사에서 사업주의 자료협조의무에 대한 강제성을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유가족의 자료수집부담도 조금 덜 수 있을 것임
- 산재 사건, 특히 산재사망과 관련해서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망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신청절차를 밟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이후 손해배상을 위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입증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고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어떤 것을 주장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크게 도움이 됨
- 국선노무사 제도를 산재에도 도입하게 된다면, 산재신청부터 급여수급, 손해배상까지 전 과정에서 걸쳐 가족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일차상담을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임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임. 이는 기존의 국선노무사 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등을 참조하여 제도를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국선노무사 제도는 부당해고 및 차별시정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을 위해, 또는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 산재신청을 제외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그나마 다른 유가족에 비하여 덜한 산재유가족에 있어 가장 큰 서비스 욕구는 심리지원서비스라고 생각됨. 앞서 패널조사결과에서도 재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고, 이 연구의 질적분석결과에서도 유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드러내고 있음

- 갑자기 맞닥뜨린 가족구성원의 사망은 유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만, 산재 유가족은 산재신청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기 힘들. 또 어른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동안 자녀들은 스스로 정신적인 힘듦과 다투고 있음. 이들에게는 심리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까지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산재 유가족은 다른 유가족에 비하여 연금이 지급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덜한 까닭에 지원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아예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음.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상당수 프로그램은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산재보험에서 산재가족들을 위하여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심리지원서비스는 유가족에게 매우 필요한 서비스라는 점, 다른 제도에서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재해자에게 이미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지원이 산재보험에서 별도로 유가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산재보험에서의 심리상담은 거의 대부분 재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등이 있음.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재해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임
- 유족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존의 재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재해자를 위한 심리상담(특히 외부연계상담)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유가족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일종의 자조모임으로 가능하며, 멘토링프로그램은 유가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이 연구에서도 제안한 동료지원상담가 제도로, 그리고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은 남은 유가족을 위한 가족상담프로그램으로 가능할 것임

### 중증장애 가족을 위한 서비스

- 현재 산재보험에서 재활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로 나누고 있음. 그러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이 강조되는 것에 비하여 사회재활은 아직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산재보험 사례들을 보면 사회재활급여는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음. 중증장애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요양과정에서 의학적·심리적·사회적·지업적 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여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재활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회재활급여로 지급가능한 급여로서,

- 차량보조: 재해자가 차량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이 가능하도록 차량보조가 이루어짐. 이는 차량의 구입, 장애로 인한 추가 장치, 면허증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포괄함. 차량보조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됨
- 주거보조: 장애인에게 적합한 적응시설이나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거지 마련에 필요한 경우 주거보조급여가 지급됨. 이는 이사비용, 간병인을 위한 거주공간 마련을 위한 비용도 포함됨
- 가사보조: 이는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지급됨. 가사보조의 경우 수급자가 가계를 더 이상 이끌어가기 불가능하거나, 동일가구내 다른 사람이 가계를 더 이상 이끌어가기 불가능하거나, 동일가구내 어린이가 만12세를 경과하지 않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됨
- 자녀돌봄급여: 도움이 필요한 연령제한은 만18세가 경과되기까지(학업중 또는 직업훈련 중에는 만25세가 경과되기까지) 지급되고,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가사보조금과 동시에 지급되지는 않음

##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생활 실태 및 경험에 관한 연구」 토론문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I. 들어가며

소중한 연구결과를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은 없지만 의사로서 산재 당사자 또는 가족들을 만난 경험에 근거에서 발제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II. 발제내용에 대하여

## 1. 산재가족경험연구

사고사 유가족 세 분, 과로사 유가족 세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주요이슈를 도출해낸 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산재승인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산재이후 변화된 가족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먼저 산재를 당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들이 알기 어렵고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진행하고, 신속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기 위한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지만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공인노무사 제도의 도입이나 선보장 후평가제도의 도입 등 과 같은 대안들이 논의중에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과로사 유가족의 경우 경찰 산재입증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크다는 점에서 유가족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쿠팡 급식 노동자 박현경님의 사례는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애도를 할 겨를도 없이 진실을 알기 위해 사측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입었을 상처,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 유가족이 겪었을 고통이 되풀이 돼서는 안됩니다. 고인의 과로사를 입증하기 위해 억울함이 없도록 대리인인 김민호 노무사가 사력을 다해 조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학 전문가들도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역학조사가 필요하지 않고 신속공정하게 승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업무관련성 평가서)

피재자에서 만 37세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은

역학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이 0.2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드문 젊은 여성이라는 점과, 위험요인을 많이 가질수록 발병위험이 높아지는 허혈성심장질환의 특징에서,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을 제외하고 해당되는 위험요인이 없다는 점,

구체적인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인 온도변화 실내공기오염의 유해한 작업환경, 3개월 전부터 업무량의 52% 증가로 만성적 과중한 업무, 1주일전 긴급 방역 점검으로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는 점,

업무중 협심증 양상의 심한 흉통이 발생하였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하여 빠른 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는 점에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유가족이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은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 사회에 산재 트라우마에 관한 상담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의 근로자건강센터가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사망의 경우 산재 승인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망으로 인한 산재신청자에 대해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지원하고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사망이나 중증장애이후 가족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직업병 피해자는 화학물질 중독으로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자꾸 질문을 하면서 관계가 악화되고 폐를 끼치는 것이 미안하고 더 사이가 나빠지는 게 두려워서 별거를 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연구결과로서 제시된 적은 별로 없지만 저와 같은 직업병 전문 의사는 자주 접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가족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합니다.

한편 산재가족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신속/공정한 심사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막지 못하고 이러한 죽음이 되풀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유가족의 고통은 지속될 것입니다.

## 2. 산재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검토

2017년 요양 종결자를 대상으로 산재 가구생활상태를 분석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평가한 내용은 우리 사회가 그간 산재가족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가족에 대한 간접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 지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등

의 한계로 들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의 제도에 대하여 산재유가족과 중증장애 가족들이 알아서 신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나열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만으로는 이 무거운 현실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으로부터 압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 여가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가족 원스텝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서비스, 재난 심리회복 지원센터의 현황을 둘러보아도 여기에 산재가족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역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할 때 지역사회내의 여러 자원을 찾아보고 직접 만나보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논을 해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원체계들은 고유목적성이 있기도 하지만 산재가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서비스 제공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근로자 건강센터가 노동자 심리상담을 시작했을 때 직무스트레스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심리상담사를 찾기 어려웠고, 산재 트라우마 사업도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이 나서서 산재환자 및 가족의 특수성을 감안한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3.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 지원정책

재난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산재가족들을 보호하자는 백승호 교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난의 정의에 산재를 포함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다른 재난 관련 법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마다 정의를 달리할 수도 있지만 산재사망/중증장애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분명한 논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둘째, 말씀하신대로 비극의 유형에 따라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산재이후 어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어디부터 지역사회에서 담당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당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주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실패한 결과인 산재에 대해서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하는 생각이고, 한편으로 대부분 정부 위탁사업형태로 이루어지는 일반보건복지 시스템은 근로복지공단보다 안정성이 떨어지고, 산재환자와 유가족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까지 가능한 전문인력이 우리 사회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사회내 복지시스템에 산재가족을 포괄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 일정기간이후 서비스 제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요양이 종결되고 산재환자/가족의 특수성에 관한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된 이후에는 지역사회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재법상 복지증진 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의 확대를 제안하신 데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관련하여 쿠팡 코로나 감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질병을 앓고 회복되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해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사회에는 그 분에게 도움이 될 제도는 없다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산재로 인해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는 누가 어떻게 보상/지원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문제는 또 올 것입니다.

### Ⅲ. 마치며

아주 오래전 중증산재 환자들을 위한 간병서비스 제공 개선에 관한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중증산재 청년과 가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첫 날 전신화상과 추락으로 사지마비가 된 청년과 십여년이 넘는 세월을 돌보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은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지원이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논의들이 중증장애/산재사망 가족들의 눈문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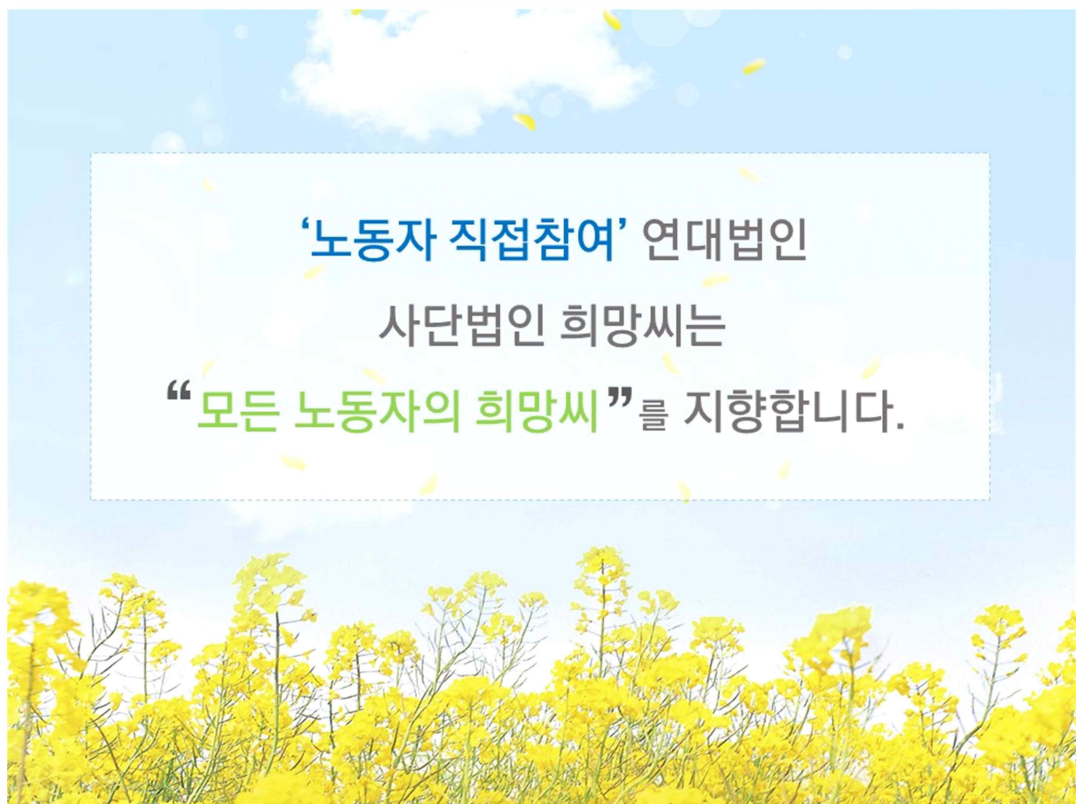


## 사단법인 희망씨 소개

사단법인 희망씨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자실천'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2013년에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희망씨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자 중심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단법인 희망씨 주요 사업

나눔사업	①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희망울타리'- 장기투쟁사업장 비정규노동자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교복지원(신입학지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생리대 지원(장애청소년,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등의 사업 ②네팔아동학교보내기 - '포카라지역의 학교짓기 및 운영지원', '빨벗지역의 급식비지원', '급식비지원을 위한 저금통 모금사업', '빨벗지역 아동들의 자매결연', '네팔나눔연대여행'등을 진행 ③기타 -'과일나눔', '집수리'사업 등
소통사업	가족간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서 '가족캠프', '아버지학교'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
노동인권사업	'지역사회노동인권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지역단위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 양성과정' '산재노동자가족지원사업'등을 진행



##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소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 2017년 12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노동사회의 약자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재단에서는 공공기관 및 노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 비영리단체와 더불어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의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상생과 연대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상생과 연대의 따뜻한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실행해 나가겠습니다.

### ■ 재단 미션 및 비전

○ 미션 : 상생과 연대로 함께하는 건강한 노동존중 사회

○ 비전

-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 확산
- (사회적 연대) 비정규직과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노동공동체의 촉매
- (사회적 격차 완화) 조건의 평등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 (정의로운 사회 실현) 내부자 중심 활동을 넘어 모든 을과 약자의 권익 대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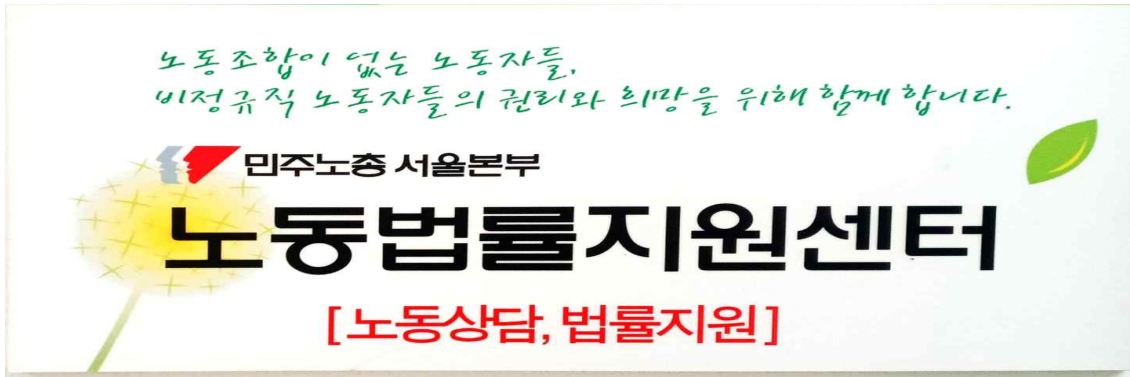
# 노동건강연대

노동건강연대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옹호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하는 사회운동단체이자 비영리민간단체법상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 노동조합이 세세히 신경 쓰지 못하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직, 파견, 외주하청,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조합을 조직하기조차 힘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합니다. 한편 여성, 이주노동자, 서비스업 노동자 등 전통적 남성 노동자 계층 외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안전, 건강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전신인 ‘노동과건강연구회’는 1988년 창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2001년 산재추방운동연합이라는 연합 단체의 해소와 함께 사라졌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남은 활동가들이 2001년 노동건강연대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기업이나 정부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단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 민주노총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법률사업 전문기구입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부설기구로서, 전문적인 노동 상담 및 법률사건처리, 노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6월 민주노총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법률사업 전문기구입니다.

### ■ 매년 약 4,000건의 노동법률 상담·사건 처리와 각종 법규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매년 약 3,000건의 노동 상담 및 법률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소속 노조 및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對시민 법률상담·지원의 1차 창구로서, 주로 노동부 진정·고소사건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와 연계하여 민주노총 전체의 법규사업, 상담사업, 노동위원회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종 법률교육사업, 노동행정감시사업, 법제도 연구개선사업 등의 정책기획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노위사업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로 구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에 결합하여 노동조합 설립·운영·투쟁에 대한 각종 법률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 법규활동가들의 중심단위로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 수습 노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인 “민주노총 지원 노무사과정 [노동자의 벗]” (노벗)을 매년 개최하여 법규활동가들을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1천여 명의 노무사들이 참여했고 본 과정을 통해 배출된 200여명의 노무사들이 현재 각 단위 노동조합·노동단체 활동가로서 또는 노동자·노동조합 지원활동을 전담하는 개업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02년 진보적 노무사들의 연대체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설립을 주도하였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지원과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법규활동가 연대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위협 아래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선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에 함께 하면서, 2003년 10월 24일에 출범하였습니다.

산업재해는 기업의 이윤 중심 경영과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삶을 기준으로 노동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현장에 기반한 전문성을 무기로 노동자의 몸과 삶을 주제로 한 참여연구,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교육, 폭넓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가. 명 칭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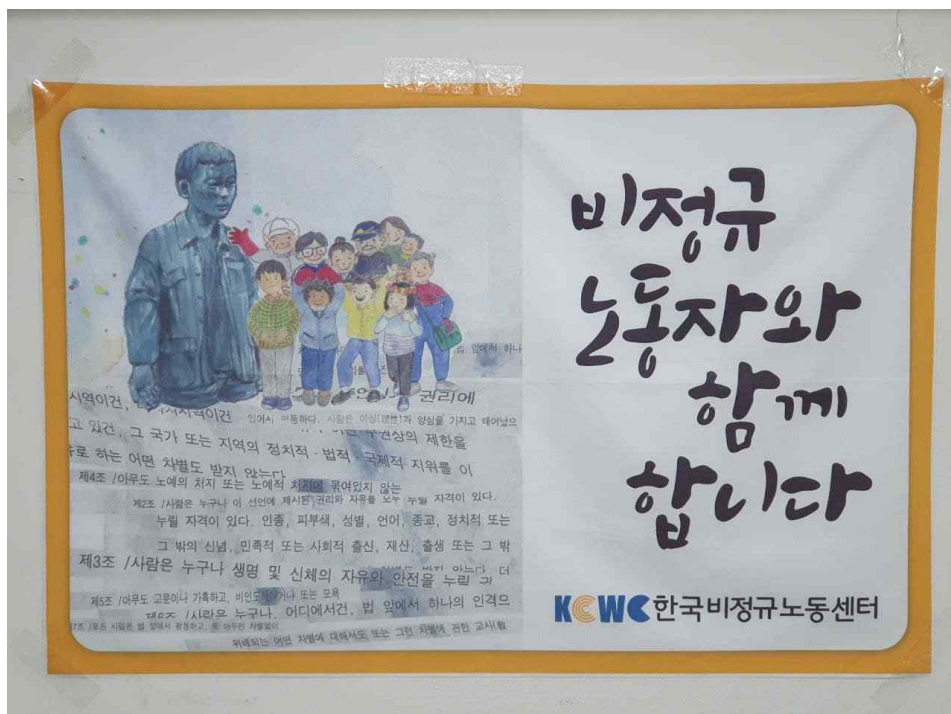
나.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다. 설립목적 :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서 제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연구하고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함

라. 설립일 : 2000.05.20

마. 주요 사업

- 연대: 노동,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단위와 연대·협력
- 정책연구: 비정규노동·노동 관련 각종 정책연구
- 위수탁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2014~현재),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2018~현재)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전국 노동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
- 격월간<비정규노동>발행: 격월간으로 잡지 발행





##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약칭 한비네)

가. 설립목적 : 90년대 IMF이후 대량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양산. 일터 차별 심화.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구조화로 사회전반이 불안정해짐. 노동인권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동 문제 개선과 해결을 과제로 삼고 비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2010년 지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지비네) 결성 이후 2012년 11월 29일 민간노동단체와 지자체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를 아우르며 한비네 출범. 현재, 전국노동센터 100여개 단체 중 50여개 지역센터와 노동단체들이 소속되어 활동 중

### 나. 주요 사업

- 한비네 수련회 & 워크숍: 주제토론, 지역사업 사례공유, 안건논의 등
- 한비네 집행위 : 수련회 의결사항 집행점검 및 긴급사안 논의 등
- 현장연대 : 지역노동현안 연대, 선전전, 간담회, 집회, 토론회 진행
-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 비정규문제 관련 주제토론, 사례발표, 대안 및 전망 찾기
- 한비네 활동가 공동워크숍(2014년, 2016년, 2018년)
  - 활동가 친목도모, 역량강화 등

### ○ 조직화 사업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결성(전국 30여개의 센터 결합) :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행. 2차에 걸친 상생협약 체결, 더불어 노조와 연합회, 자조모임 등 지역별로 다양한 조직화 진행

### 다. 한비네는 ~

- 노동조합 바깥에 있는 노동자, 취약계층노동자,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차별해소, 그리고 조직화를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할 것임. 지역과 현장을 기반으로 비정규노동자와 활동가가 만들어가는 노동이 존중받는 인간다운 사회를 지향함.





## 2021년 산재(사망)노동자가족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캠페인 사업단

### [ 함께 하는 단위 ]

-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사단법인희망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 [ 함께 한 사람들 ]

분야	이름	소속	분류
연구팀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책임연구원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노무사	
	고태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김은선	희망씨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김호규	희망씨 노동인권사업국장	
동행지원팀	변정윤	한국비정규직 노동단체네트워크사무국장	
	김다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서진솔	전 인터넷신문기자	
	이혜정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위원	
	김은선	희망씨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김호규	희망씨 노동인권사업국장	
자문위원	고진	심리상담사	
	이정아	드림심리상담센터 센터장	
	김성호	해당노동법률사무소 대표	
선정위원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대표	법률 자문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사업 자문
	최유진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전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장)	
	이은선	희망씨 위기가정사업 담당	
사업실무 주체	김한나	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사업 책임자(공공상생연대기금)
	김은선	희망씨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사업 책임자(희망씨)
	김호규	희망씨 노동인권사업국장	사업 실무

더불어사는 삶 사단법인

희망씨 